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

수집된 개인정보는 입학 전형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.

1. 수집하는 개인정보 - 필수 항목 : 지원자 정보(이름, 주민등록번호(재외국민 /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: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), 주소, 전화번호, 휴대전화번호, 이메일), 추가 연락처, 학교정보(최종학력구분, 재학 / 출신고교명, 졸업(예정)연도, 고교 전화번호)
2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대입 입학 전형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
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

※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이를 거부할 경우 대입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.

동의함

동의하지 않음

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

대입 원서 접수 및 입학 전형을 위해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여권번호)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[근거 법령 :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]

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?

※ 고유식별정보 수집을 거부할 경우 대입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.

동의함

동의하지 않음

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

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

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	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	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	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	기타
한국대학교육협의회/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, 지원자 출신 고등학교	학교알리미에 진학 통계 자료 제공	등록대학, 모집단위명	처리목적 달성 시까지	

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?

※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이를 거부하여도 대입 원서는 접수할 수 있습니다.

동의함

동의하지 않음

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대한 동의

대입 원서 접수 및 입학 전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,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수탁업체	위탁업무	개인정보의 보유·이용기간	기 타
한국교육학술정보원	학생생활기록부 온라인 추출	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	
한국교육과정평가원	수능성적 온라인 추출	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	
한국대학교육협의회 /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	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조항 위반자 사전 예방 및 위반자에게 통보	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	고등교육법 시행령
한국대학교육협의회 /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	수시모집 지원 횟수 검색 및 통보	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	주민등록번호 : 일방향으로 암호화된 상태로 제공
(주)진학어플라이	대입 원서접수 대행	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	
(주)유웨이어플라이	대입 원서접수 대행	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	

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동의하십니까?

※ 개인정보 취급 위탁을 거부할 경우 대입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.

동의함

동의하지 않음

입학전형료 환불 안내

고등교육법시행령제42조의3(입학전형료)

② 고등교육법(이하 '법'이라 한다.) 제34조의4 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: 과납한 금액
 2.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: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
 3.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: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
 4.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(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 :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
 5.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: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
- ③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 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수입·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.
- ④ 대학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둘 이상의 반환 방법을 마련하여 반환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반환 방법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
- ⑤ 대학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.
- ⑥ 대학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※ 전형료 환불 시행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이를 거부할 경우 대입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.

전형료 환불 시행에 동의합니다.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.

지원자 확인

(서명)